

##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 약관 개정 대비표(안)

현행	개정(안)	비고
<p>제5조 2항(수수료)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p>	<p>제5조 제2항(수수료) 회사는 <u>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조(약관의 변경 등)를 준용한다.</u></p>	<p>수수료 안내와 변경에 관한 내용 추가</p>
<p>제8조 제2항(회사의 책임)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제8조 제2항(회사의 책임) 제1항에 불구하고 <u>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u></p>	<p>전자금융거래법 반영 (금강원 요청)</p>
<p>(신설)</p>	<p>제8조 제4항(회사의 책임)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무위험지표 금리(이하 “KOFR 금리”라 한다)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 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p>	<p>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경과이자규정</p>
<p>제16조 제1항(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p>	<p>제16조 제1항(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에게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u>고객에게 전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p>	<p>모바일 통지 방식인 SMS 추가</p>
<p>(신설)</p>	<p>제16조 제3항(약관의 변경 등)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p>	<p>의사표시 의제 통지 관련 내용 보완</p>

	<p>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신설)	<p>제21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한다)하였음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p> <p>2.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다른 경우 수취금융회사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p>	<p>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반영</p>
(신설)	<p>제22조(거래의 제한)</p> <p>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p> <p>1.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p> <p>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p> <p>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p> <p>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p> <p>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p> <p>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p>	<p>거래 제한        사유 기재</p>

	④ 제 2 항의 경우에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23년 3월 6일